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06다19672 채무부존재확인  
2006다19689(반소) 보험금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

원고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, 허현희, 김혜영, 구민수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

피고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5나39527, 2005나39534(반소)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6. 30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

주 심 대법관 박재운 \_\_\_\_\_

대법관 김영란 \_\_\_\_\_